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24 선고 2019가단2119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52164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24 선고 2019가단211934 판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박건률, 곽소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현

담당변호사 김준혁, 최진용

변 론 종 결 2021. 10. 20.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6. 8. 29. 체결된 영업자산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이 피고를 대신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일자별 금액을 지급한 행위를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일자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C 사이에 2016. 8. 29. 체결된 영업자산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224,167,9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224,167,92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5. 11. 24. C을 상대로 ‘C에게 고용되어 피자 가맹점의 배달원으로 일하던 D이 2015. 9. 13.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선정자 E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D의 사용자인 C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7408 손해배상(기)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8. 2. 2. ‘C은 선정자 E에게 298,656,319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000,000원, 선정자 F, G에게 각 9,000,000원, 선정자 H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3.부터 2018.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2. 27. 확정되었다.

나. C은 2016. 8. 29.경 C의 배우자였던 피고1)와 사이에, C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운영하던 'J'(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 잔금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시설비 총액조)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다. 이후 C은 2016. 9. 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86,800,000원을 반환받았고, 2016. 10. 31.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 뒤 미수금을 공제한 계약이행보증금 15,131,925원을 반환받았다.

라. 피고는 2016. 8. 31.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 I과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C이 사용하던 모든 기물을 포함한 물품 일체를 이전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마. 원고들은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K)에서 일부 금원을 배당받았고, 이에 따라 2019. 5. 20. 현재 선정자 E은 338,505,346원, 원고(선정당사자) A는 28,273,779원, 선정자 G는 11,822,054원, 선정자 F은 11,200,685원, 선정자 H는 8,711,644원의 채권(합계 396,756,443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9, 12, 13, 15, 20 내지 23, 27, 31호증, 을 제15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2018타채53235 채권가압류 사건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통하여 2018. 5. 11.경 이미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및 I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이 C에게 지급되어 원고들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행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5. 21.경에 제기되었다.

2) 원고들은 2020. 6. 8.에 이르러서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임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초 채권자가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에 원상회복청구만이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기재가 소송물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원상회복청구에 한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착오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청구취지의 보충 내지 정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리켜 새로운 소의 제기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157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인 L이 2018. 5. 11.경 “C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관련 사건에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당시 원고들이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C이 별지 목록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영업채무’라 한다)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로 원상회복청구만을 기재하였지만,

청구원인으로서 C이 피고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기재한 사실, 원고들이 위 영업권 양도의 취소를 구하는 2020.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2020. 1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위 영업권 양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하여 당사자가 서면 공방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만을 기재한 것은 소송물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원상회복청구에 한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착오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누락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취지의 보충 내지는 정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리켜 새로운 소의 제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날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5. 21.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2018. 2. 27. 원고들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손해는 2016. 8. 29.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에 현실화되었지만, 그 당시 이미 위 손해배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C의 불법행위 사실이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C에 대한 손해배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영업채무 변제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C이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새로운 영업채무는 더 이상 자신이 변제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영업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영업채무 변제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C에게, 계약이행보증금 25,000,000원 중 2016. 10. 31. 기준 미지급 식자재 대금 9,868,075원을 공제한 15,131,925원 상당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C의 모든 사업상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영업채무는 C이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2016. 10. 31. 직후인 2016. 11.경에 지급된 점, 이후에는 C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채무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채무는 C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 부담한 채무로서 C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이 피고의 영업상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이자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2) C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 3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M, N은행, O은행, 기업은행, P은행, Q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56,049,407원 상당의 예금채권, 86,8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5,131,925원 상당의 I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권 및 성남시 분당구 R아파트 S호(500,000,000원 상당)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C의 소극재산으로는 C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²⁾ 합계 348,656,319원, 주식회사 M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 원금 6억 원 등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였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364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사해행위에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장 영업권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C이 2016. 3. 25.경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2018. 2. 27. 원고들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위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손해는 2016. 8. 29.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에 현실화되었지만, 그 당시 이미 위 손해배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C의 불법행위 사실이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공동담보가 한 층 더 부족하게 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한 채, 상당한 대가인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장 영업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스스로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선의를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C으로부터 2016. 8. 29.경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C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C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5. 1. 8.경 108,570,000원을 들여 인테리어공사를 마쳤음에도 약 1년 8개월 가량 후인 2016. 8. 29. 이 사건 사업장을

1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가맹 본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무권리점포가 많이 나왔음에도 C의 전처인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그리고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 영업권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C에게 양도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 영업권의 가액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 돈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24,167,927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제기한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141조에 의하여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참조). 다만 그로 인하여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들별로 피보전채권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권주위 원칙상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6. 8. 29.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민

목 록

(단위: 원)

거래일	출금	비고
2016-11-01	200,000	대행비
2016-11-01	1,966,364	☐ 카드결제
2016-11-02	89,280	단말기요금
2016-11-02	18,190	단말기요금
2016-11-02	18,190	단말기요금
2016-11-02	18,410	단말기요금
2016-11-02	178,800	단말기요금
2016-11-02	89,400	단말기요금
2016-11-02	1,000,000	☐
2016-11-02	22,500	정수기
2016-11-05	1,600	콜라값
2016-11-07	3,579,692	본사식자제
2016-11-09	1,330,130	☐ 급여
2016-11-10	299,390	
2016-11-10	421,120	
2016-11-10	322,605	
2016-11-10	283,410	
2016-11-10	262,305	

2016-11-10	273,070			급여
2016-11-10	102,510			급여
2016-11-10	420,000			
2016-11-10	434,280			급여
2016-11-10	150,750			급여
2019-11-14	1,644,524			이자
2019-11-14	114,601			카드
2016-11-17	19,021			카드
2016-11-21	1,778			
2016-11-25	42,140			
2016-11-25	31,280			
2016-12-19	10,000			
합계	13,345,340			

선정자명단

1. A
2. E
3. F
4. G
5. H. 끝.

1) 피고는 2008. 1. 25. C와 협의 이혼하였다.

2)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채무가 장래에 발생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할 채무라 할 것이다.